

무꿈사 원산지관리사 개정사항 (2026)

# 무꿈사 X 윤준필 원산지관리사

## 한-UAE CEPA 요약표



### ! 저작권 주의사항 !

해당 자료는 무꿈사 아카데미의 지적재산권입니다. 무꿈사의 동의 없이  
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, 배포, 수정 하는 등 2차 가공을 금지합니다.  
자료 또는 수험 관련 질문은 네이버 무꿈사 카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■ 한-UAE(아랍에미리트) CEPA의 특징 요약표 - 2026. 06. 30

윤준필 관세사

| 구분     |        | 한-UAE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관절차   | 원산지증명서 | 발효일                  | 2026년 5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발급방식                 | • 기관발급<br>• 자율발급(인증수출자 한정)<br>※대한민국 우선시행(UAE는 추후 공지에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발급주체                 | • 기관발급: 한국(세관, 상공회의소)<br>UAE(대외무역부)<br>• 자율발급: 인증수출자(한국 우선 시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서식                   | • 기관발급: 통일서식<br>• 자율발급: 송장, 인도증서, 상업서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|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제출생략 가능              | • 미화 1,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<br>•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|
|        |        | 사후적용                 | 수입일 후 1년 이내 사후적용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운송요건   |                      | 비당사국 세관 통제 + 하역, 재선적, 재라벨링, 화물의 분리, 상품보존공정 정도의 작업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정문    | 사용 언어  | 규정상중시 영문본 우선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산지검증  | 검증     | 검증방식                 | 간접 후 직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검증주체                 | • 수출국 세관(간접)<br>• 수입국 세관(직접) - 수출국 입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회신     | 회신기간                 | • 간접검증 회신: 6개월<br>+ 수출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: 90일<br>• 직접검증: 검증 방문이 완료된 날 후 3개월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| 회신주체                 | • 간접: 수출국 세관<br>• 직접: 조사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미회신 조치 |                      |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가가치계산 | 계산방법   |                      | 공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부가가치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| QVC40%<br>(EXW가격 적용시 QVC3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기준가격   |                      | FOB가격 또는 EXW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비고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QVC = RV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국 송장 |        | 제3국 발행 송장정보를 CO상에 기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직접운송규정 |        | Yes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역내생산영역 |        | 당사국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역외가공   | 허용 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품목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특정상품(역외가공물품)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범위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양국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누적기준   | 재료누적   |                      | Y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공정누적   |                      |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최소허용기준 | 가격기준                 | 일반품목<br>농수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중량기준      | 섬유제품 | 중량 또는 EXW가격의 10%이하  |
| 중간재          | 인정여부      |      | Yes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대상물품      |      | 역내생산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지정의무      |      | No                  |
| 대체가능물품       |           |      | 상품, 재료(모두 인정)       |
| 간접재료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원산지재료로 간주           |
| 부속품·예비부분품·공구 | 세번변경기준    |      |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|
|              | 부가가치기준    |      | 원산지별 구분계상           |
| 소매포장         | 세번변경기준    |      |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|
|              | 부가가치기준    |      | 원산지별 구분계상           |
| 수송(운송) 포장·용기 |           |      | 고려하지 않음             |
| 세트물품         | 인정여부      |      | Yes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비원산지 허용한도 |      | EXW가격의 15%이하        |

(이상)